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

愼　奎　晟*

Ⅰ. 序　言

高麗前期의 土地制度의 根幹을 이룬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究明하는 것은 韓國社會經濟史硏究의 關鍵이 된다. 田柴科體制를 體系的으로 硏究한 白南雲은 高麗의 經濟的 社會構成을 集權的 封建制로 規定했다.[1] 最近에는 白南雲의 規定과는 달리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아시아的 古代奴隷制」로 規定하는 學說이 一部에서 擡頭되고 있다.[2] 比較的으로 社會經濟史硏究에 必要한 史料가 豊富한 高麗前期社會의 性格規定의 이러한 亂脈相을 克服한다는 것은 韓國의 經濟的 社會構成의 歷史的 展開의 把握을 위해서 반드시 克服되어야 할 것이다.

本文을 展開하기에 앞서 問題의 所在를 正確히 把握하기 위하여 간단히 硏究史的 檢討를 하겠다. 白南雲의 問題意識과 分析視角은 福田德三의 大土地私有制의 缺如=封建制 缺如論[3]에 刺戟받아 大土地私有制를 立證하므로서 封建制缺如論을 克服하려는데 있었다.

오늘날의 硏究水準에서 보면 支配層相互間의 主從關係를 나타내는 封建制와 農民支配機構인 莊園制와는 明白히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지만[4] 白南雲은 이것을 混同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問題意識에 사로잡혀 社會經濟史硏究의 核心인 農民支配機構의 體系的 硏究는 소홀히 하고 支配層相互間의 主從關係 즉 公私田의 分析과 私的土地所有의 擴大過程의 分析에 焦點을 돌렸던 것이다. 즉 그의 방대한 著書의 장황한 目次의 어느 곳에도 直接生產者의 社會經濟的 性格의 把握에 있어서 基本이 되는 「民田」에 관한 項目이 없으며 民田에 대한 關心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白南雲의 分析은 그의 焦點이 上部構造에 있었으며 社會經濟的 性格의 基本問題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그는 直接生產者인 農民의 支配機構에 관한 分析도 없이 高麗社會의 基本性格을 아프리오리 封建制로 規定하고 集權制냐 分權制냐의 差異에만 問題視角을 集中시켰기 때문에 「集權的 封建制」라는 槪念으로 高麗社會의

* 東亞大學校 副敎授

1) 白南雲著『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卷(高麗の部)』(東京：改造社, 1937年)

2) 姜晋哲「高麗 田柴科體制下의 農民의 性格」(韓國經濟史學會編『韓國史時代區分論』(서울：乙酉文化社, 1970年)所載) 前田直典「東アジアにおける 古代の終末」(歷史14)(鈴木俊, 西嶋定生編『中國史の時代區分』(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57年) 所載) 有井智德「高麗朝初期における公田制」(『朝鮮學報』第13輯).

3) 福田德三,「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經濟學硏究』1904年) 鈴木武雄著『朝鮮の經濟』(東京：日本評論社, 1942年) 47~48面.

4)「莊園이라는 것은 封建社會의 하나의 本質的 要素이지만 그것 自體로서는 보다 오래된 制度이고 또 더 오래토록 繼續될 運命에 있었던 것이다. 健全한 用語使用을 위해서는 이 두 槪念을 明白히 分類해야 한다.」(Marc Bloch, Feudal Society, trans by L. A. Manyon, (London: Routledgen Kegan Paul Ltd; 1961) Vol. 2, 441.

基本性格을 規定했다.[5]

이러한 白南雲의 經濟史硏究方法으로서는 農民의 社會經濟的 性格을 把握할 수 없으며 歷史를 發展的으로 理解할 수 없다. 즉 生産過程과 條件 그리고 直接生産者와 生産手段인 土地와의 關係, 그리고 共同體內의 農民相互間의 關係를 硏究하므로서만 農民의 社會經濟的 性格이 究明될 수 있는 것이다.[6]

最近에 高麗前期 즉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아시아的 古代奴隷制」로 規定하는 見解가 나타나고 있다. 이의 論據는 大家族의 「集團的 收取」에서 小家族의 「個別的 收取」로의 移行과 收取의 主體가 國家에서 私的大土地所有者로의 移行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아시아的 生産樣式」과 「封建制」의 差異에 대한 認識의 不徹底에 있는 것이다. 즉 白南雲의 規定方式처럼 그의 焦點이 「疎外된 勞動의 視點」에서의 土地所有에만 놓여 있다. 따라서 農民的 土地所有 즉 「스스로의 勞動에 의한 土地私有」의 分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7] 이런 方法으로는 「아시아的 生産樣式」과 「封建的 生産樣式」과의 區分이 曖昧해진다. 이 兩者의 區分의 基準은 共同體內의 所有의 分割 즉 「스스로의 勞動에 의한 個人的 土地所有」의 成長與否가 追求되어야 한다. 이러한 共同體的 個人的 土地私有는 生産過程이 共同的 生産에서 小規模的 個別生産 즉 家族勞動에 의한 小經營의 成立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的 生産樣式은 原始共同體의 最後段階(여기에서는 生産은 벌써 大家族生活協同體別로 個別的 性格을 가지나 土地의 所有는 아직도 定期的 分割交替에 의하여 共同所有가 이루어지고 있다)인 아시아的 共同體를 基盤으로 成立했으며 直接生産者는 共同體와 直接的으로 統一되고 共同體로부터 自立하고 있지 않다. 이때의 貢納義務도 直接的으로 負擔한 것은 現實的 共同體인 것이다. 그러나 生産過程의 個別的 性格때문에 共同體的 個人的 所有(스스로의 勞動의 視點)가 發展하여 直接生産者가 生産手段의 所有者로서의 國家(疎外된 勞動의 視點)에 對立하는 段階가 온다. 中央集權的인 官僚制度는 共同體 農民으로 부터 剩餘勞動을 直接收取할 必要性 때문에 이러한 段階에서 發展한다. 이 段階는 벌써 아시아的 生産樣式이 아니다. 生産條件의 所有者(個人이든 國家든)가 土地의 占有者로서 直接生産者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相對하고 이 直接的 生産者로부터 剩餘勞動을 經濟外的 强制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收取하는 形態는 벌써 封建的 收取體系인 것이다. 이러한 移行의 徵候는 벌써 統一新羅時代인 聖德王 31年(722年)의 丁田支給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經濟外的 强制의 現象形態도 西歐와는 다르다.

拙稿는 比較經濟史的 方法을 應用하면서 지금까지의 實證的 硏究를 利用하여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經濟的 社會構成의 歷史的 展開의 焦點을 마추어 全體像을 浮刻시킬려고 한다.

---

5) 白南雲의 根本的 誤謬는 單系的·普遍的 段階論, 나아가 西歐社會의 歷史的 發展觀에 支配되어 理論이 實證을 支配하고만 것이다. 이러한 單系的·普遍的 段階論은 마르크스史學에서도 反省되고 있다. ニヴゲニ・ヴアルガ「アジア的生産樣式について」(村田陽一, 堀江正規譯『資本主義經濟學の諸問題』(東京：岩波書店, 1966) 所載) F, テーケイ, G, シエノ共著, 本田喜代治編『アジア的 生産樣式の問題』(東京, 岩波書店, 1967年) 伊豆公夫「アジア的 生産樣式の新肯定論について」(『歷史評論』 1967年 7月號)

6) 우리는 相異한 地代의 諸形態(資本地代, 封建地代, 過渡的 地代등)를 바로 社會的 生産過程의 發展段階의 視點에서 區別해야 한다. 즉 社會的 生産過程의 性格如何에 따라 土地所有形態도 變한다.

7) 社會的, 集團的 所有에 對立하는 것으로서의 私有는 勞動要具및 그밖의 外的勞動條件이 私的個人의 所有에 屬하는 곳에서만 成立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私個人이 勞動者이냐 또는 非勞動者이냐에 따라 私有도 다른 性質을 갖는다.

拙稿는 原稿紙面數의 制約때문에 부득이 田柴科體制의 全體像을 素描하는데 끝쳤음을 附言해 둔다.

II. 田柴體制의 認識을 위한 基本槪念으로서의 「丁」

田柴科體制의 基本史料인 『高麗史』에서 가장 基本原理가 되는 것은 「國家는 田 17結로서 一足丁을 삼고 軍人에게 一丁을 支給하는 것이 옛날의 田賦制度의 遺法이다」란 句節인 것 같다.[8] 이 句節은 田柴科體制가 崩壞한 뒤인 恭愍王 5年(1356年)의 記錄이지만 이것이 田柴科體制의 하나의 原則임을 말하고 있다. 보통 常識으로는 丁은 壯丁을 意味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土地의 一定單位를 意味하고 있다.

그리고 重要한 것은 田柴科體制下에서 全國의 土地를 丁을 單位로 區劃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土地를 一定한 面積으로 區劃하는 것을 「作丁」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丁」이 土地 그 自體를 意味하고 있다. 「丁」「丁田」「田丁」「足丁」「半丁」「亡丁」「投下田丁」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丁」은 國家의 收取體系와 關聯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疎外된 勞動의 視點」에서 본 槪念이라는 共通的 性格을 갖는다.

이와 같이 「丁」이라는 것은 勞動力을 把握하기 위한 壯丁에서 出發하여, 그들에게 支給된 土地單位를 意味하고 나아가 그것이 土地 그 自體를 意味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丁」이라는 것은 田柴科에 의하여 兩班들에게 支給된 土地뿐만 아니라 農民들에게 廣範하게 支給된 土地 모두를 包含한 作丁付籍된 土地一般을 부르는데 使用되고 있다.[9] 따라서 「丁」의 社會經濟的意味를 正確히 把握하는 것이 田柴科體의 理解를 위한 捷徑이 되는 것이다.

恭愍王 5年의 記錄에서 確認될 수 있는바와 같이 「足丁」은 田17法이며, 그것은 選軍給田의 單位도 되고 또 田賦之法 즉 租稅賦課의 單位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足丁을 支給받은 農民은 軍人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租稅賦課의 單位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土地를 耕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足丁」 17結은 必然的으로 農業經營과 關聯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軍人은 農民身分에 따라 그것이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金載珍敎授는 「丁」을 英國中世史에서 나타나는 「하이드」(hide)에 比肩한바 있다. 그것은 銳利한 指摘이다.[10] 最近의 硏究成果에 의하면 「하이드」라는 것은 「一個家族의 土地」를 나타내는 라틴語인 terra unius familia를 飜譯한 것이며 그것은 앵글로·색슨의 잉글랜드 移住以後 켄트를 除外한 잉글랜드의 諸地方에 있어서 원래 「메쓰」(maegth 血族)를 單位로 占取된 土地가 最終的으로 分割될 때의 土地分割의 基礎的 單位였다. 그리고 그것은 一般的으로 앵글로·색슨의 初期의 社會組織의 참다운 基底를 이루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當時의 農業經營土地占有의 基本單位를 나타낸다. 그런데 各家父長制 家族共同體

8) 「國家 以田十七結 爲一足丁 給軍一丁 者田賦之遺法也」(『高麗史』 卷 81·兵志, ·恭愍王 5年(1356年) 六月條.

9) 어떤 學者들은 「田丁」이 府兵과 鄕吏其人등 一定한 職役과 關聯하여 支給된 土地로서 公·私田 그리고 莊·處田과 別途로 區分되어야할 하나의 土地種目으로 생각했다. (姜晋哲著, 『韓國土地制度史(上)』 1320-132面) 그러나 田丁이 寺院에도 支給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主張은 無理인 것 같다. (『高麗史』 卷 46, 恭愍王 3年(1392年) 6月條) 그래서 最近에는 田柴科에 의하여 支給된 田土가 바로 田丁이라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武田幸 男 「高麗時代の 口分田と 永業田」 (『社會經濟史學』 33卷 5號, 1967年 12月), 同 「高麗田丁の再檢討」(『朝鮮硏究會論文集8, 朝鮮における 土地問題と 農民問題』(1971年 3月)

10) 金載珍 「田結制硏究 第1編 田結制本質論」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2輯 1958年)

內部에 있어서 共同經營의 個別化의 進展에 따라 「하이드」的 土地所有의 分解와 單婚制家族의 成立으로 「노르만」征服이 以後 잉글랜드의 莊園에 있어서 標準的인 封建的 隷屬農民의 保有地 1하이드(120에이커)의 4分之 1인 버게이트(30에이커)로 變하는 것이다.[11]

우리나라의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共同體的 土地所有의 發展에 관하여는 文獻史料도 없고 考古學的 硏究成果가 未熟한 段階에 있기 때문에 共同體內의 生產의 性格과 土地所有의 發展을 알 수 없다. 단지 推測컨데 統一新羅期의 丁田支給은 國家權力이 村落共同體內部의 農民的 土地所有에 介入한 것으로 보아 「足丁」이 케르만的 共同體內의 個人的 私有單位인 하이드에 比肩되기보다도 標準的인 封建農民의 保有地로 보는 것이 社會經濟史的 背景에서 보아 보다 適切한 것 같다.

「足丁」이 갖는 社會經濟史的 意味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總人口數, 總耕作面積 그리고 農業經營規模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高麗一代의 史料上에 人口數가 나타나는 것은 『宋史』 高麗傳에 나오는 「男女二百十萬口」라는 記錄뿐이다. 그리고 開墾比率도 元의 支配下에 있을때 元의 收奪을 冒免할려고 李齊賢이 우리나라는 小邦이며 山林과 川藪로 無用한 땅이 十分之七이라고 말한 記錄뿐이다.[12]

따라서 이러한 史料로는 平均農家의 經營規模를 알 수 없다. 그러나 田柴科體制보다 앞선 統一新羅期의 村落帳籍文書(755年)에 나타나는 戶當人口 및 戶當耕作面積을 參考로 利用할수 있다. 그때의 戶當平均家族數는 10名이었고 耕作面積은 戶當 10結이였다. 300年 뒤인 田柴科體制下의 戶當人口規模와 耕作面積을 이것으로 推測할 수 없지만 新羅帳籍文書上에 나타나는 人口變動趨勢는 人口減少로 나타나고 있다.[13] 新羅極盛時代에 人口가 減少하고 있기 때문에 田柴科體制下의 條件과 별다른 變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一足丁 17結의 農業經營上의 意味를 생각해보자. 一足丁의 絕對面積이 얼마인지 學說이 區區하다.[14] 筆者의 생각으로는, 一結은 租 20石의 產出地로서 土地의 肥沃度에 따라 그의 絕對面積은 달랐다. 그런데 高麗文宗 23年(1069年)의 規定에 따라 上等田 1結의 絕對面積을 오늘날의 坪數로 換算하면 1998.2坪도 約 0.7町步에 該當한다. 그때의 收穫高를 成宗 11年(992年)의 公田租率에 따라 計算하면 租 18石이 된다. 오늘날의 水田一町步의 平均收穫高 50石과 比較하면 그 때의 土地生產性이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高麗時代의 1石은 15斗로서 그것을 大邱地方의 옛날 네모官斗(7,500cc)로 換算하면 오늘날에 55.5升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때의 上等田은 오늘날의 平均收穫高의 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高麗初期에는 오늘날의 土地利用方法처럼 年年耕作이나 二毛作을 한것이 아니고 地力回復을 위하여 休耕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土地는 그의 肥沃度에 따라 不易地, 一易地, 再易地로 나누어 不易地는 年年耕作을 한 土地이며 一易地은 1年休耕을 하고 再易地는 年休耕을 한다. 그런데 高麗中期까지 全國에 걸쳐 不易地는 거의 없었다.[15]

---

11) 田中正義, 「アングローサクソンの社會とその封建化」(岩波講座 『世界歷史』 7卷(東京 : 岩波書店, 1969年)

12) 「更念小邦 地不過千里 山林川藪 無用之十分而七」(『高麗史』 卷110. 列傳, 李齊賢條)

13) 旗田 巍, 「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 新羅村落文書の 硏究——(『歷史學硏究』 226, 227, 1958年 12月, 1959年 1月)

14) 朴克采 「朝鮮封建社會의 停滯的 本質——田結制硏究——」 (全錫談外 4人共著, 『李朝社會經濟史』 (서울 : 勞農社 1946年) 所載), 金載珍 「田結制硏究 第1編」, 朴興秀 「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관하여」 (『학술원 논문집』 11卷, 1972年 11月)

15) 「李齊賢(1281-1367) 贊曰 · 三韓之地 非四方舟車之會……而鴨綠以南 大抵皆山 肥膏不易之田 絕爲而僅有也」(『高麗史』 世家 卷2, 景宗條)

그런데 이러한 一易地, 再易地는 自然狀態대로 放置된 「陳」과는 다른 것이며 그것은 一定한 勞動力을 投入하여 土地를 管理해야만 했든 것이다.

以上의 分析을 통하여 耕作地가 不易地가 아닌 再易地라면 不易地보다 3倍의 耕作地가 必要하며 또 그러한 土地를 耕作하기 위해서는 많은 勞動을 投入해야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의 收穫高의 거의 9분의 1정도 밖에 올리지 못했다.

따라서 그 當時는 오늘날의 平均農家人口인 5名보다 倍가 넘는 平均人口를 扶養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平均戶當耕作面積보다 거의 20倍에 가까운 17結을 農土를 保有해야만 했든 것이다.

以上으로 高麗初期의 一足丁인 田 17結은 標準農家의 所耕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때의 낮은 土地生産性과 낮은 勞動生産力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役畜이 必須不可缺이였고[16] 自然的·人爲的 酷甚한 災害를 克服하기 위해서는[17] 大家族인 家父長制世帶協同體를 「三丁一戶」原則下에 收取의 單位로 把握하여 租·庸·調의 收取關係에 들어간 것이다.[18]

III. 田柴科體制의 基礎로서의 民田의 性格

그러면 一足丁으로 支給되는 土地의 保有條件과 그러한 土地를 保有하는 者의 社會經濟的 條件이 무엇일까. 이러한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高麗史』에 나오는 民田의 性格分析이 必要하다. 그러나 『高麗史』 自體의 性格이 編纂者들의 이데오르기에 規定되었기 때문에 食貨志에 있어서도 公·私田에 관한 記錄이 壓倒的으로 많고, 民田에 관한 史料는 筆者가 아는限 15個處에 나올 뿐이다.[19] 더욱이 그것이 나오는 出處가 食貨志와 世家, 列傳에 나올 뿐 高麗朝의 律令體系를 集大成한 刑法志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法規範이 支配者 中心이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農民保有農地에 대한 權利가 侵害받도록 放置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民田이 田柴料體制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把握하기 위해서 食貨志의 編纂方針을 巨視的 眼目에서 조감해 볼 必要가 있다. 『高麗史』 食貨志는 田制 戶口 農桑 貨幣 鹽法 借貸 科斂 漕運 祿俸 常平義倉 賑恤의 順位로 大別되고 田制는 다시 經理 田柴科 功蔭田柴 公廨田柴 祿科田 踏驗損實 租稅 貢賦로 細分되고 있다. 그런데 食貨志에 있는 民田에 관한 史料는 모두 「經理」條에 記載되고 있다.

食貨志 經理條를 熟讀해 보면 그것은 주로 國家의 土地管理에 관한 것으로, 그의 주된 內容이 土地의 地品과 開墾및 耕作權의 保護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民田은 「스스로의 勞動에 의한 土地私有」로서의 側面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基礎 위에서 封建的 土地所有 즉 「疎外된 勞動의 視點으로 본 土地所有」가 田柴科 功蔭田柴 公廨田柴로 다타나고 있다.

---

16) 「食爲民天 穀由牛出」(『高麗史』 列傳, 趙浚傳)

17) 高麗初期에 旱魃은 平均 三年一回의 比率로 다가왔다. (田均原之助 「高麗朝に於ける米穀の生産と供給とについて」『東方學報』 14冊 15冊 1943年

18) 深谷敏鐵 「高麗時代の 民田についての考察」(『史學雜誌』 第69編 1號, 1960年)

19) 紙面制限으로 民田에 관한 史料를 本論文에서는 提示하지 않았다. 民田史料分析은 筆者의 다음 論文에 있다. (愼奎晟 「高麗時代 農民의 社會 經濟的 性格에 관한 硏究」(東亞大學校 『東亞論叢』 第12輯, 1975, 所載)

이와 같이 民田은 田柴科體制의 基礎를 이루기 때문에 國家는 그것을 保護했던 것이다. 食貨志 經理條에서 民田은 「有主付籍之田」으로서 私田인 「兩班折給之田」과 明白히 區分되고 있으며 그 權利의 源泉을 閑田開墾에 두고 있다. 이러한 「有主付籍之田」은 「作丁」된 土地로서 國家土地臺帳에 登載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생각함에 있어서 核心的인 問題인 것이다. 즉 國家는 「丁」으로 把握된 土地를 直接生產者인 農民에게 個別的으로 支給·保有시킴으로서 租·庸·調의 收取關係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收取體系는 封建的인 收取體系인 것이다. 따라서 아세아的 共同體를 媒介로 收取당하는 아세아的 生產樣式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封建制와 아세아的 生產樣式의 本質的 差異는 共同體內의 土地의 分割與否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歷史를 發展的으로 理解하기 위한 重大한 認識點이다.

그리고 이렇게 國家의 保護를 받는 民田은 田柴科體制崩壞를 前後하여 耕作은 물론 貸與·贈與·賣買·子孫에로의 傳給의 權利의 內容을 갖는 私的所有로 變化·發展해 간 것이다.[20]

民田史料의 分析을 통하여 누구나 認定하는 것은 첫째 民田은 高麗의 全期間을 통하여 全地域에 걸쳐 存在했다. 둘째 民田은 國家의 稅役을 負擔한다는 것 셋째 民田은 權勢家의 侵奪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事實등이다.[21] 그러나 問題가 되는 것은 첫째 民田의 均分政策, 즉 唐과 같은 均田制의 實施與否 둘째 民田의 保有者가 「高麗史」에 나오는 丁戶냐 白丁이냐 그리고 그들의 保有條件이 무엇이냐 하는 問題이다.

그런데 民田史料를 高麗前後期로 나누어 살펴보면 前期에는 公家나 私人이나 이른바 「權有力者」에 의한 民田의 占奪現象이 全然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바로 田柴科體制의 維持가 民田의 健在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면 첫째 均田制의 實施與否를 檢討해 보면, 食貨志 經理條에 「抽減民田……審量公田 如數償之」「民田多寡肥瘠不均 請使量之 均其食役」「州民田畝 累經水旱 肥瘠不同 請遣使均定」「民田 量給已久 肥瘠不同 請遣使均定 從之」등타 文句에서 알 수 있듯이 國家가 民田의 均等配分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는 것과 또 「先王制定內外田丁 各隨職役 平均分給 以資民生 又支國用」에서 보는 것처럼 國家는 原則的으로 民田의 均等配分을 指向하고 있었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楊州界內見州 置邑已百五年」「民田 量給已久」라는 句節이 나타나고 있는 語感은 國家가 農民의 所耕田에 대하여 週期的으로 關與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民田에 대한 週期的인 國家의 關與가 없어도 田柴科體制의 維持에 별다른 支障이 없었던 것은 民田 즉 田丁에 대한 嫡長子連立制가 存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22]

그러면 民田의 保有條件과 保有者가 누구인가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보면 民田은 「征稅」「食役」「州縣賦稅」「賦役」을 負擔해야할 土地였다. 或者는 이러한 稅役이 國家가 賦課한 公租公課이며 따라서 國家徵稅의 對象이 되는 土地이며 따라서 그것의 保有者는 軍·其人

20) 有井智德「高麗朝に 於る民田の所有關係につい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1971年 3月)
21) 旗田 巍『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東京：法政大學出版局, 1972年)
22)「靖宗十二年(1046) 制 諸田丁連立 無嫡子 則嫡孫 無嫡孫 則同母弟……則庶孫 無男孫 則女孫(『高麗史』 卷84刑法志 1 戶婚條)

戶·驛丁戶등 職役負擔을 媒介로 土地를 給與받은 者가 아닌 白丁이라고 主張한다.[23] 그 根據로서 軍人田은 養戶나 佃戶로부터의 收租地이며 鄕吏는 租稅를 納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白丁도 耕作地를 갖고 있고 差役을 당하기까지는 納租할 것이 豫想되고 또 徭役도 負擔하고 있기 때문에 民田의 耕作者는 白丁이라고 推論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그렇게 單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鄕吏나 兵卒도 「稅布」와 「田租」를 負擔하고 있기 때문이다.[24] 그러면 白丁과 土地와의 關係를 살펴보자, 史料에 의하면 白丁은 公田을 給與받음으로서 丁戶가 되며[25] 또 白丁은 軍役을 媒介로 族親田을 얻고[26] 있으며 白丁이 土地를 얻어 驛丁戶로 編成되고 있다. 이와같이 白丁은 公田을 給與 받음으로서 丁戶가 되는 것이다.[27] 그러면 公田과 民田과의 關聯을 추궁하므로서 民田의 保有者와 保有條件 그리고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이 浮刻될 것이다.

IV. 民田과 公·私田의 關係

위에서 白丁이 公田을 給與받음으로서 丁戶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 公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高麗史』에 의하면 公田을 除外하고 모든 土田을 臣民에게 差를 두어 賜與했는데 在位者가 貪鄙하여 公私田을 함께가졌다는 記錄이 보인다.[28] 따라서 全國의 土田은 公·私田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公田은 宮·寺院田, 그리고 軍·田과 區別되고 있으며,[29] 또 私田인 苗裔田·役分田·功蔭田·功臣田·登科田·軍人田·其人戶閑人田은 田租의 收入 즉 收租權이 給與된 土地이다.[30]

그리고 公田도 收租를 하는 땅이기 때문에 公·私田은 「疎外된 勞動의 視點」에서 본 封建的 土地所有를 나타내는 槪念이며 그의 區別은 上部構造의 次元에서 본 剩餘生産物의 歸屬에 따른 區別이다. 즉 「公·私租賦 皆由民出」인 것이다.[31] 그리고 公·私田의 田租를 官吏가 모두 徵收하고 있다.[32] 비록 高麗草創期와 田柴科崩壞期에는 私田의 收租가 私田主의 奴僮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33] 田柴科體制의 基本原則은 官收官給이 였다.

그러나 公·私田의 區別이 收租權의 歸屬如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公·私田은 收租率

23) 旗田 巍『前揭書』

24) 「以封王太后 請州·郡·縣進奉長吏·從卒等 各田丁稅布全放」(『高麗史』 卷80食貨志 3賑恤 睿宗 3年(1108)) 「詔 請州縣兵築城者 水軍轉輸軍輔者 賜今年田租之半」 (同所 仁宗 14年(1136年) 5月條)

25) 「白丁給公田爲丁戶」 (『高麗史節要』 卷 2 成宗 9 年條)

26) 「睿宗四年(1106)制 神步班屬諸白丁 願受內外族親田者 田雖在他邑 名隷本邑 許令充補」 (『高麗史』 卷81兵志, 五軍條)

27) 「分各驛丁戶六科……一科十五……若有田而丁口不足 以本驛白丁子枝自願者充立」 (『高麗史』卷83兵 2 驛館條.

28) 「先王制 土田除公田外 其賜民各有差 在位者貪鄙 公私田兼有之」 (『高麗史』列傳卷42 崔忠獻條)

29) 「顯宗十四年(1023年) 閏九月 判 凡諸州縣義倉之法 用都田丁數 收斂一科公田一結租三年 二科及宮寺院·兩班田稅二年 三科及軍·其人戶丁租一年」(『高麗史』 食貨志 3 常平倉條)

30) 「前朝田制 有苗裔田·役分田·功蔭田·功臣田·登科田·軍田·閑人田·其食其田租之人」(鄭道傳 『三峰集』卷 7 經理)

31) 「公私租賦 皆由民出」(『高麗史』卷129崔忠獻列傳)

32) 「諸州縣 公·租田 川河漂損 樹木叢生 不得耕種 如有官吏 當其佃戶及諸族類隣保人 徵斂稅粮……」 (『高麗史』卷78食貨志1, 租稅條睿宗 3年(1108年))

33) 『高麗史』卷2, 太祖世家2, 太祖 12年(934年)條와 『高麗史』卷78. 食貨志 租稅 忠宣王復位之年(1332年)條 參照.

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34] 즉 公田은 四分取一인데 私田은 分半制를 取하고 있다. 이것은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克服하기 힘든 難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理由 때문에 公·私田의 租率이 이렇게 顯著한 隔差가 생기는 것일까. 이에 대한 解明을 試圖한 學者는 많다.[35] 或者는 公田의 耕作者는 一定한 賦役을 負擔함에 대해서 私田의 耕作者는 그러한 負擔이 없기 때문이라고 推論한다. 또 或者는 그 理由를 公·私田의 歷史的 背景에서 구하여 私田은 新羅時代에도 存在했을 것으로 推測되는 並作半數를 私田主에 認定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土地私有制만을 强調하는 것으로 問題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剩餘生產物의 源泉은 勞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生產手段인 土地를 耕作하는 直接生產者에 대한 支配가 보다 더 本質的인 것이다. 高麗一代를 통하여 奴婢辨別問題가 田柴科體制의 維持에 못지 않게 重大問題로 다루어진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公·私田 租率의 差異는 直接生產者인 耕作者의 社會經濟的 位置를 解明하므로서 理解가 될 것이다. 물론 田과 奴碑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公田耕作者의 社會的 地位를 생각해보자. 앞에서 본것처럼 白丁이 公田을 給與받음으로서 丁戶가 된 것이다. 그런데 或者는 白丁이 公田을 給與받아 丁戶가 되면 公田은 民田에서 軍·其人田이 되고 그것은 公田도 아니고 私田과 區別되는 土地로 變한다고 생각 한다.[36] 그러나 軍人田, 其人田은 田柴科에 의하여 支給받은 收租地인 私田인 것이다. 따라서 丁戶의 耕作地는 民田이며 그러한 私田과 區別되어야 한다.

그런데 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高麗軍制와 鄕職 그리고 驛站制에 대한 理解가 必要하다. 특히 高麗軍制에 대한 理解가 必須的이다.

高麗의 兵制는 層의 府兵制와는 다른 것이다. 『高麗圖經』 卷11 伏衛條에 의하면 民으로서 年 16以上者는 軍役에 充當되나 그 軍制는 둘로 나누어지고 京師의 六軍(六衛)에 屬하는者(府兵)와 餘軍(外軍)으로 나누어지고 府兵은 驍勇한 者가 選拔되고 分番上衛하여 王城을 지키고 있으며 京府에 常駐하는 數는 約 3萬이며, 府兵以外의 軍은 모두 授田되고 있으나 有事時에만 兵이 되고 平常時에는 農耕과 勞役에 從事했으며, 京軍과 外軍을 合한 것이 60餘萬程度라고 한다. 이와같은 高麗兵制에서는 府兵과 外軍의 區別은 本質的인 것이며 그 歸屬이 明瞭하게 區分되어 있다. 그리고 『高麗史』에 있어서도 京軍과 外軍은 明白히 區分되고 있다. 府兵은 年滿二十歲에 受田하지만 外軍은 16歲로서 丁이되고 徵兵調役에 服務토록 되어있다.[37]

그리고 田柴口分之田은 士大夫 물론 州·府·郡·縣·鄕·所·部曲·津驛之吏와 모든 國役負擔者에게 支給되었든 것이다.[38] 즉 「內外田丁을 制定함에 있어서 職役에 따라 土地를 平均分給하므로서 民生에 資하고 國用을 지탱했으며 그러한 土地(=民田)를 占奪하고 公租를 不納하고 田野가 開墾되어도 國貢이 歲減하게 된다.」[39]

以上의 推論으로 公田은 民田이며 民田은 丁戶에게 「量給」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比較

34) 「光宗二十四年(793年) 十二月 制 陳田墾耕人 私田 則初年 所收全給二年 始與田主分半 公田限三年全給 四年 始依法收租 「成宗十一年(992年)公田租 四分取一」(『高麗史』卷78食貨志1, 租稅條)

35) 深谷敏鐵 「高麗の 私田租率に 關する 疑問」, 同 「朝鮮に 於る 近世的 土地所有の 成立過程」(『史學雜誌』第55編 2號, 3號) 姜晋哲 「高麗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29輯 1965年 12月)

36) 旗田 巍 『前揭書』

37) 李基白 『高麗兵制史硏究』 (서울 : 一潮閣, 1968年) 202-228面.

38)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39) 『高麗史』 食貨志田制 經理條.

經濟史的인 面에서 보아 英國에서 征服王 윌리암이 英國을 侵攻(1066)하기 以前에 앵그로·섹슨 王國에서 田柴科體制下의 民田과 同意語인 folkland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또 royal foklland 즉 royal demesne으로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40]

V. 白丁의 起源과 그의 社會經濟的 性格

民田의 保有者가 丁戶라면 白丁은 어떠한 土地를 耕作하고 있는 것일까. 이 問題가 바로 高麗時代의 社會經濟史를 理解하는데 가장 큰 難題가 되고 있다.

어떤 學者는 白丁을 足丁, 半丁과 關聯시켜 白丁(=單丁)은 給田에서 除外된 자들이라고 보고 있다. 즉 高麗時代의 編戶基準은 三丁一戶制로서 三丁으로 編成된 戶가 足丁戶이며 二丁으로 編成된 戶가 半足丁이고 軍丁戶는 出役이 免除되기 때문에 給田이 없는 白丁이라고 생각했다.[41] 물론 『高麗史』에서 三丁을 基準으로 水軍戶를 編成하거나, 三丁不足者에게 僧侶에로의 出家를 制限하고, 또 單丁에게는 從軍시키지 아니한 記錄이 보인다. 그러나 唐의 均田制처럼 繼續的으로 丁의 數에 따라 給田한 것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難點인 것이다.

또 或者는 白丁은 羅末의 激動期에 自己 保有農土를 喪失한 者들이며 이들은 羅末의 地方豪族들이 私的으로 支配한 廣大한 土地의 小作形態로 耕作한 者들이라고 主張한다.[42] 그러나 이러한 主張에 대해서는 確證이 없는 것이 難點이다.

또 或者는 『高麗史』 刑法志 戶婚條에 나오는 嫡長子單獨相續規定을 根據로 相續權이 없는 次子以下를 白丁의 發生原因으로 생각 한다.[43]

그런데 白丁을 생각 함에 있어나 하나의 暗示가 되는 것은 恭愍王 11年(1362年) 密直提學白文寶의 上疏文의 內容이다. 즉 國家의 田夫에 대한 土地給與는 足丁 半丁을 單位로 支給되고 있으나 같은 上疏文에 貧民의 經營規模는 數畝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租稅는 收穫의 半이 되고 있다.[44] 여기에서 우리가 推論할 수 있는 것은 國家의 租稅徵收單位는 「足丁」「半丁」이며 「足丁」「半丁」戶內의 所耕田에 대해서는 國家는 關與하고 있지 않는다는 事實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史料에 의하면 白丁은 土地를 開墾하고 있으며 또 隨院僧徒로 轉落하고 있다.[46]

姜晋哲敎授의 주장처럼 羅末麗初의 混亂期에도 農民은 土地에 대하여 어떤 關係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自己保有耕作地를 갖는 農民과 그것을 喪失하고 남의 佃戶로 轉落한 사람들이 있었는 것이다. 그리고 豪族들이 自己勢力下의 農民을 그들의 保有耕作地의 有無에 따라 支配樣式이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麗朝가 成立하여 田柴科體制를 整備하면서 王權의 支配領域下에 있는 土地와 人民을 三丁一戶의 原則下에 足丁을 單位로 戶를 編成시키고 租·庸·調를 足丁을 單位로 賦課하고 收取했든 것이다. 그리고 豪族들의 兼併地를 役分田이라는 名目으로 給田하여 封建的 土地所有를 限定시키고 그러한 土地를 耕

40) 田中正義, 「前揭論文.」
41) 深谷敏鐵 「高麗時代の 民田についての考察」.
42) 姜晋哲 「高麗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에 대하여」.
43) 李佑成 「閑人·白丁의 新解釋」 (『歷史學報』 1962年 12月)
44) 「恭愍王……十一年(1362年) 密直提學白文寶 上箚子 國田之制 取法於漢之限田 十分 稅一耳 慶尙之田 則稅與他道 雖一而漕 輓之費 亦倍其稅 故田夫之所食 十八其一 元定足丁 則七結 半丁則三結加給(『高麗史』 卷78食貨志 租稅條) 「恭愍王 十一年 密直提學白文寶 上箚子 貧民 歲耕數畝 租稅居半」 (『高麗史』 卷79食貨志, 科斂)
45) 旗田 巍 『前揭書』

作하던 農民을 白丁으로 放置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丁戶는 職役을 媒介로 民田의 保有者가 되었으나 白丁은 丁戶의 土地를 借耕하거나 私田의 耕作者로서 收穫의 2分之1을 收取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田柴科體制가 整備되고 王權이 伸張되면서 私田에도 漸次 國家權力이 介入하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確實한 것은 國家는 一定한 職役과 租稅徵收를 위하여 足丁을 單位로 土地를 支給하고 嫡長子單獨相續에 의하여 足丁을 單位로 直接生產者를 把握하는데 滿足하고 足丁內部의 借耕에 대하여서는 關與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田柴科體制下에 있어서의 唐과 같은 均田制가 實施되지 못한 理由인 것 같다. 그러나 이와같은 推論은 하나의 推測이며 確證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本稿에 관한 史料全體로 矛盾없이 解決하기 위한 假說이다. 더 많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VI. 結　語

지금까지 田柴科體制下에 「丁」의 槪念이 갖는 社會經濟史的 意味를 前提로 종래의 學者들이 無視하여 온 民田에 焦點을 맞추어 民田의 保有者와 保有條件을 公·私田의 性格 그리고 兵制와 相續制度등의 考察을 媒介로 分析하였다. 이러한 分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推論이 可能했다. 즉 民田의 耕作者는 職役負擔의 丁戶이며, 이들은 州縣軍으로서 道路·橋梁·城壁의 修理등 雜役에 從事하고 有事時에는 出征했으며 또 驛戶등과 같이 國家統治機構의 中軸을 이루는 役割을 했으며 이들이야말로 高麗王權의 基礎였다. 그리고 그들은 民田(=公田)의 保有條件의 하나로서 10分之1乃至 4分之1의 地代를 國家에 納付했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高麗時代農民의 主流를 形成했던 것이다. 따라서 田柴科體制의 基本的 性格은 國家的 封建制로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筆者의 생각을 比較經濟史的으로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佛蘭西 中世史研究의 泰斗인 「마크·부록」(Marc Bloch)은 그의 最後의 力作인 『封建社會』(La Société Féudale)란 著書의 마지막 32章과 39章에서 支配層相互間의 關係를 나타내는 封建制와 直接生產者인 農民隷屬의 一類型인 莊園制와를 槪念的으로 明確히 區分할 것을 主張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武裝農民이 存續하는 社會에서는 누구도 從士制(vassalage)나 莊園(manor)을 알지 못한다. 반면에, 예컨데 스칸디나비아나 西北스페인 王國에 있어서처럼 다만 不完全한 形態의 從士制나 莊園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잔틴帝國의 경우에는……8世紀의 反貴族的 叛亂 以後에 로마時代의 훌륭한 行政的 傳統을 維持해오고 또 强力한 軍事力을 保有하는데 더많은 關心을 가진 政府는 國家에 대하여 軍事的 義務를 負擔하는 借地(tenements)를 創出했다. 그러한 借地는 조그만한 農家로서 이루어지는 農民采地(peasant fiefs)이기 때문에 西歐의 封土와 다르지만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眞正한 采地(fiefs)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兵士」들이 自作地(soldier' properties)——一般的으로 小保有地이지만——를 富裕하고 강한 者들의 侵害로 부터 保護하는 것이 帝國政府의 지대한 關心事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世紀에 들어오자 農民들이 끊임 없이 負債로 獨立性을 維持하기 어려운 經濟的 條件때문에 帝國이 壓倒당하고 또 內的 混亂에 의하여 弱化됨으로써 自由農民에 대한 適切한 保護를 擴大하는 것을 中止했다. 이와 같이 帝國은 貴重한 財政的 源泉을 喪失했을 뿐만 아니라 帝國自體가 土豪(the magnates)들의 손아귀에 빠져있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土豪만이 그 뒤에 그들의 被支配者들로 부터 必要한 軍隊를 動員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되었다.」[46]

以上과 같은「마크·부록」의 비잔틴帝國에 대한 統治機構, 軍事組織, 그리고 農民支配에 관한 歷史的 叙述을『高麗史』를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最近의 研究에 의하면 6世紀의 유스티니아누스 1世의 皇帝勅令(Codex Justinianus, 529年)에 의하면 農民은 土地保有者를 意味하는 possessores로서 國家의「臺張에 이름과 住所를 記載한 者」였다. 그리하여 國家는 그들을 國家義務에 의하여 一般國稅負擔農民, 軍事義務負擔農民, 驛遞義務負擔農民으로 三分·編成하고 그들에게 保護를 加하여 豪族인 듀나토이(dunatoi)에게 對抗했던 것이다.[47] 이와같이 우리가 高麗時代 특히 田柴科體制下의 農民을 國家統治機構上에서 생각할 때 비잔틴帝國의 農民支配와 國家統治機構의 特徵은 示唆的이다.

餘面이 있어 附言해 둘것은 高麗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이 國家的封建制라고 規定했지만 이러한 歷史的 範疇自體가 西歐社會의 分析에서 導出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高麗田柴科體制의 基本性格은 表象할 수 있을런지 疑問이다. 그래서 筆者는 高麗田柴科體制의 基本的性格을 國家的 封建制가 아닌 다른 歷史的 範疇로 만들려고 思索해 보았다. 즉 丁戶制律令制社會 등등, 이것은 앞으로 저와 같은 經濟學者뿐만 아니라 政治學者, 社會學者, 歷史學者등이 共同으로 研究해야 할 課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問題가 앞으로 筆者自身의宿題로 남겨두겠다.

46) Marc Bloch, Feudal Society, Vol. 2, p. 444.
47) 米田治泰,「ビザンチン世界の國家と經濟」(岩波講座『世界歷史』, (東京：岩波書店 1969年)